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(문금주의원·정점식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751

발의연월일: 2024. 6. 20.

발 의 자:문금주·정점식·이병진

박대출 · 서일준 · 김태호

김종양 • 주철현 • 서미화

양부남 • 서천호 • 이종욱

박희승 • 허성무 • 조계원

김 현 • 민형배 • 김남근

임미애 • 박성민 • 서영석

전진숙 의원(2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「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」에서 남해안발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지정하는 개발지구에 입주하는 기업 등에 대하여 토지·건물 등 국유재산을 50년의 범위에서 장기 사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(안 별표 제219호 신설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문금주의원·정점식의원이 대표발의한 「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」(의안번호 제746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

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 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법률 제 호

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별표 제21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연번	국유재산특례 근거 법률	특례유형	존속기한
219	「남해안권 발전 특별법」 제59조	장기 사용허가등	2034. 12. 31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